
우체국 건립기준

2026. 3.

목 차

I. 우체국 신축시 기본방향	1
II. 우체국 증·개축시 기본방향	2
III. 우체국 형태별 건립 기준	3
【참고1】 총괄국 건립 물량기준 및 면적 세부 산출내역	6
【참고2】 집배센터 건립 물량기준 및 면적 세부 산출내역	16
【참고3】 창국 건립 물량기준 및 면적 세부 산출내역	23
【참고4】 우체국 업무형태별 평면·단면 구성도(예시)	28

I. 우체국 신축시 기본방향

□ 우정사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창구국 「관서수 상한제(총량제)」 적용

- 창구국 신축은 최소화하되,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내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구도심의 실적 저조국 이전 재배치 추진
- 투자국 이외의 임차국 설치는 수익/비용에 면밀한 검토후 결정

□ 창구접수·배달·임대 등 국사 중심기능을 고려하여 건립규모 산정

※ (참고) 우체국 신설 및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총괄국 ¹⁾	◇ 행정구역별 설치 : 시·구·군 단위 1국 설치 ① 區단위인 경우, 1개국에서 2개 區 이상 관할 가능 ② 신규 증설 최소화 ※ 단, 지방 소도시, 군 단위 지역으로 도로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배관서 추가 설치 가능
창구국 ²⁾	◇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우체국간 적정 거리 유지 ① 인근국과 거리 및 관할면적이 ‘창구국 신설 및 배치기준(*)’ 이상인 경우 반영 ② 지역 환경 변화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인근 우체국 이전 재배치 등 통폐합 추진 ※ 신도시의 경우 초기 정주 인구 및 이용 수요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우체국 신설보다는 우편취급국 설치를 우선 검토
집배센터 ³⁾	◇ 창구국 신설 및 배치기준에 의하되, 집배 이동거리 및 물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가능

1) 총괄국 : 시·군·구 지역의 창구업무 및 우편물 배달업무를 총괄하는 4급 또는 5급 우체국

2) 창구국 : 창구업무만을 수행하는 총괄국 소속의 5급 이하 우체국

3) 집배센터국 : 창구업무+우편물 배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총괄국 소속의 5급 이하 우체국

< (*)창구국 신설 및 배치기준 >

구분	서울시	대도시	일반시	읍면
관할면적(km ²)	2.7	4.2	5.7	1읍면 1국
인근국과 거리(km)	1.6	2.0	2.3	

* 대도시 : 광역시와 분구된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반시

* 읍·면 지역은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읍·면 1국 유지

* 관할면적 및 인근국과의 거리는 임야·하천·논밭 제외

II. 우체국 증·개축시 기본방향

□ 개축

- 현 청사 위치에 제자리 개축을 원칙으로 추진
 - 이전 개축시에는 현 청사 활용방안(매각 등) 마련 후 추진
 - 우체국 위치 부적정으로 물류기능 수행이 어렵거나, 관할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될 경우 이전 검토
 - 상습 침수지역 위치, 도시계획 변경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업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 이전 검토
- 개축은 건물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우체국을 대상으로 검토
 - 구조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반영
 - 소규모 증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업무환경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개축 지양

□ 증축 및 리모델링

- 내용연수가 장기간 남아있고, 소요면적에 비하여 확보면적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증축 추진
 - 증축 후 수년 내 개축이 요구되는 경우는 증축 지양
 - 작업장 부족시 실 재배치 등으로 소요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증축 지양
- 내용연수가 장기간 남아있고, 설비 노후 등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등이 필요한 우체국은 리모델링 추진
 - 리모델링 후 수년 내 개축이 요구되는 경우는 리모델링 지양
 - 단순 창구 환경개선 공사 위주의 리모델링 지양

Ⅲ. 우체국 형태별 건립 기준

① 총괄국

□ 총괄국 정의

- 시·군·구 지역의 창구업무(우편·금융 접수업무) 및 우편물 배달업무를 총괄하는 우체국으로 4급 또는 5급 관서로 운영

□ 총괄국 신설 기준

- 행정구역(시·군·구)에 따라 1국 설치·운영
 - * 1개의 총괄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 가능(예시: 광진우체국 → 광진구 + 성동구 관할)

□ 총괄국 건립 기준

구분	대도시(4급)	중소도시(4급)	중소도시(5급)	농어촌(5급)
부지면적(㎡)	7,360~5,420 (2,230~1,642평)	6,180~4,670 (1,873~1,415평)	5,870~4,370 (1,779~1,324평)	3,500~2,605 (1,061~789평)
건물면적(㎡)	12,000~8,370 (3,636~2,536평)	9,500~7,000 (2,879~2,121평)	9,050~6,520 (2,742~1,976평)	4,840~3,390 (1,467~1,027평)

□ 건립시 주요 고려사항

- (미래수요 고려) 현재의 기준에 확장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향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면적 계산 및 실 배치
- (작업효율성 고려) 우편물 상·하차, 구분작업 등 물류작업에 용이하도록 가급적 물류공간(집배실, 소포실 등)은 1층에 배치
- (작업장 환기) 작업실에 면하는 창호는 최대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우편작업공간은 개폐율 50% 이상인 창호 우선 적용
- (적정 창구수 유지) 영업공간의 접수창구는 접수물량, 이용고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하되, 불필요한 예비창구 설치 지양
- (수납공간 반영) 각종 식지, 비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가구 등 추가 물품 구입 최소화
- (면적기준 준수)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무실 면적기준 준수(예시 : 4급기관장 33㎡, 일반직원 7㎡) 등

② 집배센터국

□ 집배센터국 정의

- 창구업무(우편·금융 접수업무) 및 우편물 배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총괄국 소속의 우체국으로 5급 이하 관서로 운영

□ 집배센터국 신설 기준

- 총괄국의 관할면적이 넓은 경우, 집배이동거리 등 우편물 배달업무의 효율성(안전사고 예방, 유류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집배센터국 건립 기준면적

구분	집배5구	집배10구	집배15구	집배20구	집배25구	집배30구	집배40구
부지면적(㎡)	1,310 (397평)	1,430 (433평)	1,530 (464평)	1,910 (579평)	2,200 (667평)	2,350 (712평)	2,630 (797평)
건물면적(㎡)*	430 (130평)	500 (152평)	1,000 (303평)	1,250 (379평)	1,730 (524평)	1,820 (552평)	2,020 (612평)

* 해당 건립면적은 집배기능만 적용한 것으로, 영업기능(창구)은 지역 수요 등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면적 합산

□ 건립시 주요 고려사항

- (미래수요 고려) 현재의 기준에 확장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향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면적 계산 및 실 배치
- (작업효율성 고려) 우편물 상·하차, 구분작업 등 물류작업에 용이하도록 가급적 물류공간(집배실, 소포실 등)은 1층에 배치
- (작업장 환기) 작업실에 면하는 창호는 최대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우편작업공간은 개폐율 50% 이상인 창호 우선 적용
- (적정 창구수 유지) 영업공간의 접수창구는 접수물량, 이용고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하되, 불필요한 예비창구 설치 지양
- (수납공간 반영) 각종 식지, 비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가구 등 추가 물품 구입 최소화
- (면적기준 준수)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무실 면적기준 준수(예시 : 4급기관장 33㎡, 일반직원 7㎡) 등

③ 창구국

□ 창구국 정의

- 창구업무(우편·금융 접수업무) 만을 수행하는 총괄국 소속의 우체국으로 업무량에 따라 5급 또는 6급 관서로 운영

□ 창구국 신설 기준

- 관할면적, 인근국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신도시 지역의 신설수요시 관서수 총량제를 적용하여 구도심의 실적 저조국을 이전·재배치하여 운영(실질적인 우체국 수 증가 없음)

< 창구국 신설·배치 기준 >

구분	서울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관할면적(㎡)	2.7	4.2	5.7	5.9
인근국과의 거리(km)	1.6	2.0	2.3	2.4

* 관할면적은 도로, 하천, 임야 등은 제외한 실 거주면적으로 계산

□ 창구국 건립 기준

구분	3개 창구	4개 창구	5개 창구	6개 창구	7개 창구
인구수 (관할인구 + 사업체종사자 수)	1만명 미만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5만명 이상~ 7만명 미만	7만명 이상
적정 부지 면적 (㎡)	650 (197평)	730 (221평)	900 (273평)	1,000 (303평)	1,130 (342평)
적정 연면적 (㎡)	300 (91평)	360 (109평)	450 (136평)	520 (158평)	650 (197평)

□ 건립시 주요 고려사항

- (미래수요 고려) 현재의 기준에 확장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향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면적 계산 및 실 배치
- (적정 창구수 유지) 영업공간의 접수창구는 접수물량, 이용고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하되, 불필요한 예비창구 설치 지양
- (수납공간 반영) 각종 식지, 비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가구 등 추가 물품 구입 최소화
- (면적기준 준수)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무실 면적기준 준수(예시 : 4급기관장 33㎡, 일반직원 7㎡) 등

□ 총괄국 건립 물량기준

가. 영업공간 물량기준

구분			창구수 규모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전면 영업 공간	인원	- 5인 이상 과장 추가 - 7인 이상 과장+서무 추가 - 9인 이상 과장+팀장+서무 추가	6	7	9	10	12	13
	자동화기기 수	-	2	2	2	2	3	3
	자율포장대 개수	-	2	2	2	2	3	3
	총 창구 수	- 우편카운터는 금융카운터 대비 하여 같거나 1개 더 많음	6	7	8	9	10	11
	우편창구 수	- 5인 이상 관서는 폭주기 대비 서비스창구 1개 반영	3	4	4	5	5	6
	금융창구 수		3	3	4	4	5	5
	컨베이어 대수	우편창구 수 당 1개	3	4	4	5	5	6
	사서함 수	-	10	15	20	25	30	35
	자금실 직원 수	금융창구 4구 이상 1명 반영	0	0	1	1	1	1
	마케팅실 직원 수	팀장	0	0	0	0	0	0
		내근	0	0	0	0	0	0
		외근	0	0	0	0	0	0
	방문택배실 직원 수	팀장	0	0	0	0	0	0
		내근	0	0	0	0	0	0
		외근	0	0	0	0	0	0
공과금수납기	-	1	1	2	2	2	2	
우편자동화기기	-	1	1	2	2	2	2	
청원경찰	1인 의무 반영	1	1	1	1	1	1	

나. 물류공간 물량기준

구분		수도권 (4급)	대도시 (4급)	중소도시 (4급)	중소도시 (5급)	
물류 부분	우편차량 접안 대수	1톤 이하	4~1	4~1	4~1	2~1
		2.5톤 이상	4~2	4~2	4~2	3~2
	접안 최대 차량 규격	5톤	2~0	2~0	2~0	2~1
		8톤	3~2	3~2	3~2	1~0
	우편물 팔레트 수	-	70~50	60~40	50~30	40~20
	특수통상 팔레트 수	-	30~10	30~10	30~10	20~10
	순로구분기 대수	-	2~1	2~1	2~1	1~0
	소포배달 차량 대수	-	20~10	20~10	15~5	8~4
	계약소포 픽업차량 대수	-	15~10	15~10	15~10	10~5
	소포구분구	-	7~4	5~3	5~3	4~2
	집배구	집배구 수	120~90	90~70	80~60	30~20
		운용사무실 내근직	2	2	2	2
	이륜차 수	-	120~90	90~70	80~60	30~20
	물류과 사무실 인원	과장	-	40~20	30~15	20~10
		직원	1	1	1	1
	발착실 인원	팀장	5~3	5~3	4~3	4~3
		내근	1	1	1	1
	특수실 인원	팀장	6~3	5~3	4~2	3~1
		내근	1	1	1	1
	화물엘리베이터 대수	2대 반영	6~3	5~3	4~2	3~1
PDF보관 캐비닛 수	집배원 10명 당 1개	2	2	2	2	

다. 지원공간 물량기준

구분		수도권 (4급)	대도시 (4급)	중소도시 (4급)	중소도시 (5급)	
지원 부분	탕비공간	기본 적용	1	1	1	1
	전실공간	4급 이상 적용	1	1	1	0
	노조 수	4급 관서 집배노조 포함	3	3	2	2
	지원과 인원 수	-	8~6	6~4	6~4	0
	지원과 여직원 수	지원과 인원 수 × 0.7	6~4	5~2	5~2	0
	경영지도실	1명 일괄 반영	1	1	1	1
	대회의실 수용인원	전체 직원 수 - 경비원 - 주방 요원 - 미화원 - FC 수	167~127	132~104	117~90	55~40
	소회의실 인원	국장 + 관내국 수 + 경영지도실장	12	10	10	10
	경비원	4급 2명, 5급 1명 반영	2	2	2	1
	식당 사용 인원	전체 직원 수의 50% 산정	85~65	68~54	61~47	30~23
	주방 요원 수	2명 일괄 반영	2	2	2	2
	미화원 수	2명 일괄 반영	2	2	2	2
	관내국 수	-	10	8	8	8
	FC실	팀장	2	2	2	1
		내근직	2	2	2	1
		FC수	70~50	60~40	50~30	15~10
전체 직원 수	-	244~184	199~151	175~128	76~56	

□ 총괄국 건립면적 세부산출 기준

가. 영업공간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방풍실	방풍실 면적 = 방풍실 폭(a)×방풍실 깊이(b) (a) 자동문 최소폭(4.0)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공공건물 출입구)에 따라 자동문 반영 (b) 출입문 사이 유효거리(1.2)+활동공간(0.9)
자동화코너	자동화기기수에 따른 폭(a) × 깊이(b) * 365코너 매뉴얼 적용 (a) 유지보수 공간(0.2×2)+칸막이폭(0.07×2)+자동화기기폭(0.7) ×기기수(n) (b) 활동공간(1.4)+자동화기기(1.46)+기계유지보수공간(1.4)
사서함실	사서함수에 따른 폭(a) × 깊이(b) (a) 0.29×(사서함수/8단) (b) 0.34(사서함깊이)+활동공간(1.4) * 스마트우편함 크기 적용(0.29×0.215×0.34)
포장센터 (위탁업체)	최소면적 12m ²
자율포장대	{작업대 너비(0.6)×작업대 수+작업대 너비(0.8)×2*}×{작업대 너비(0.8)+복도 폭(0.7)} * 작업대 양쪽 공간 너비(작업대 한쪽 공간 너비: 0.8m)
고객실	{(우편창구수×1.8+중량저울카운터수×0.8+금융창구수×1.8+서비스 통로수×1.2+순번대기 표시기 폭(0.7m)+우편물 수거함 폭(0.3m)}×고객실 깊이+공과금수납기 대수×3+우편자동화기기수×6+청원경찰 공간(4m ² , 필요시)
현업실	{(우편창구수×1.8+중량저울카운터수×0.8+금융창구수×1.8+서비스 통로수×1.2+순번대기 표시기 폭(0.7m)+우편물 수거함 폭(0.3m)}×현업실 깊이
현업휴게실	휴게공간(현업직원수×1m ²)+갱의비품공간(현업직원수×0.6m ²) * 최소면적 15m ²
고객상담실-1 (VIP금융상담실)	10m ² (상담직원공간, 탕비실 3m ² 포함)+12m ² (응접공간)+10m ² (대기공간)
고객상담실-2 (금융/보험상담실)	8m ² (상담직원공간, 탕비실 2.4m ² 포함) + 8m ² (응접공간)
영업과물품창고	현업실 면적의 20%(±5% 면적 적용 가능) * 최소면적: 9m ²
문서고	현업실 면적의 20%(±5% 면적 적용 가능) * 최소면적: 9m ²
벽금고	15m ² (3m×5m)
자금실	자금실 직원 수 × 7m ² + 교부대(7m ²)
보험관리사실	(팀장×6m ²)+(창구접수직원수×4m ²)+(보험관리사수×3.0m ²)+ (개인라커수×0.6m ²)+상담,회의공간(10~7m ²)
보험업무용창고	지역별 보험창고 규모 기준 적용
마케팅실	(팀장×6m ²)+(내근직원×4m ²)+(외근직원수×1m ²)+창고+회의공간
방문택배실	(팀장×6m ²)+(내근직원×4m ²)+(외근직원수×1m ²)+창고+회의공간

나. 물류공간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다기능작업장 (발착+소포+수집)	운송작업공간(우편차량접안대수×16㎡)+(픽업차량접안대수×15㎡)+파레트대기공간(오전도착파레트수×1.2㎡)+((집배구수/4+소포전담구수)×4.8㎡)+발착/소포계사무실((팀장×6㎡)+(직원수×4㎡)+회의공간(8㎡))+냉장/냉동창고공간(18㎡)
발착계창고	오전도착파레트수×0.2㎡ * 최소면적: 5㎡
발착계휴게실	가구면적 + (직원수×2㎡)
화물엘리베이터	화물엘리베이터(3.0ton) 수×16㎡: 대당 4개 팔레트 동시 운송 화물엘리베이터(2.5ton) 수×10㎡: 대당 2개 팔레트 동시 운송
물류과사무실	사무공간((과장×8㎡)+(사무직원수×4㎡))+비품공간(5㎡)+회의공간(18㎡)
운용(집배)사무실	사무공간((팀장×6㎡)+(사무직원수×4㎡))+비품공간(5㎡)+회의공간(8㎡)
집배실	운송공간((16㎡×엘리베이터대수)+엘리베이터면적(대수×16㎡))+파레트대기공간(오전도착통상파레트수×1.0㎡)+(자동순로구분기대수×75㎡)+선구분작업공간+팀내배분작업공간(팀×15㎡)+순로구분작업공간(집배구수×4.5㎡)+수집우편공간+전산등록공간(PC대수×4㎡)+(PDA보관캐비닛수×1.5㎡))
이륜차 주차장	이륜차대수×(통로폭: 6+ 주차면: 2.3+ 사물함 폭:0.5)㎡ + 경사로(필요시) 경사로(폭: 3.6 + 벽:0.3*2)㎡, 구배 1/8, 상부 참 3m, 층고 5.5m(2층, 지하1층) 또는 4.5m(3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기준, 지상1층의 경우 단차 100cm 적용
집배원휴게실	가구면적+(집배구수×1㎡) * 최소면적: 32㎡
특수계작업실	팀장6㎡+(직원수×4㎡))+1.0㎡×1일도착특수통상파레트수+구분작업공간(30구당 12㎡)+구분선반작업대설치공간(30구당 2㎡)+우편물수령 등록공간(15구당 PC1대×5㎡) * 최소면적: 40㎡
특수계창고	특수계 작업실의 20% (±5% 면적 적용 가능)
갱의실(남) (휴게공간포함)	휴게공간(우편업무남자직원수/4×1㎡)+갱의공간(우편업무남자직원수×0.6㎡) * 최소면적 12㎡
갱의실(여) (휴게공간포함)	휴게공간(우편업무여자직원수/4×1㎡)+갱의공간(우편업무여자직원수×0.6㎡) * 최소면적 12㎡
샤워실(남)	(우편업무남자직원수/15)×3㎡ * 최소면적 6㎡
샤워실(여)	(우편업무여자직원수/15)×3㎡ * 최소면적 6㎡
탈의실(남)	탈의공간((우편업무남자직원수/10)×0.6)+건조/정비기본면적(6㎡) * 최소면적: 9.6㎡
탈의실(여)	탈의공간((우편업무여자직원수/10)×0.6)+건조/정비기본면적(6㎡) * 최소면적: 9.6㎡
세탁실	세탁비품면적(6㎡)+건조/보관면적

다. 지원공간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국장실	4급 관서장: 33㎡, 5급 관서장: 17㎡
부속공간 (지원부서)	탕비공간(4.8㎡) + [필요시] 전실공간(11.28㎡)
노조사무실 (우정+공무원)	위원장(1인)×6㎡+노조간부(4인)×4㎡+회의공간(10㎡) * 노조가 복수인 경우 사무실 분리 설치
지원과사무실	과장(8㎡)+팀장수×6㎡+직원수×4㎡+회의공간+비품면적(팀×2㎡)
지원과 문서고	지역별 지원과 소요공간 기준 적용
창고 (관리업무용)	지역별 지원과 소요공간 기준 적용
지원과 여직원휴게실	지원과여직원수×1.5㎡ * 최소면적: 16㎡
경영지도실 (필요시설치)	사무공간(실장×6㎡)+비품공간(5㎡)+회의공간(5㎡)
대회의실 (필요시설치)	무대공간(좌석면적×0.2)+좌석공간((관내국장수+본국직원수×60%)×1.2㎡)+조정 및 물품창고(20㎡)
소회의실	(수용인원×2㎡)+비품창고/탕비공간(6㎡) * 수용인원 산정 시 7급 중간관리자 이상 참석 기준, 최소면적:16㎡
경비실(숙직실)	근무공간(12㎡) * 1인 추가 시 4㎡ 추가 산정

라. 후생공간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식당	((총괄국직원수-집배원수)/2+집배원수/3)×2㎡ * 배식공간포함
주방	식당면적의 40%+요원실(근무인원×(2.5+2.0㎡))+부식창고(8㎡)
체력단련실	(직원수×0.1)×5㎡ * 최소면적: 32㎡
용역원휴게실	미화근무인원수×(휴게공간 2.5㎡+갱의실(남/여) 2.0㎡)+비품면적(8㎡) * 최소면적: 15㎡

마. 공용공간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서비스창고 (필요시설치)	전용면적의 1~2% (이륜차정비창고, 이륜차세차장 등)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	연면적 1,000㎡당 2㎡로 계획 * 최소면적: 10㎡
빗물이용시설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계획
기계실	전용면적의 8~10%
전기실	전용면적의 5~7% * 단, 연면적 7,000㎡ 이하(저압수전) 30㎡ 적용
공용면적	전용면적의 25~35%
MDF실 집중구내통신실	15㎡ 이상으로 1개소 이상
IDF실 중간구내통신실	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필요시 1개소 설치 * 공용면적에 포함
위탁소포 작업공간(지하)	위탁소포 배달차량 대수×(주차공간 35㎡+작업공간 20㎡)+파레트 대기공간(위탁소포 구×3대)×1.2㎡+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면적+위탁소포택배실(위탁소포구×1㎡)+경사 로*(왕복) * 직선: (차로6+벽0.3×2)×5.5×6, 곡선: (차로6.5+벽0.3×2)×5.5×7.2
초소형 전기차(지하)	소형차량대수×(통로폭: 6+주차면: 3.6+충전시설:0.5)×2㎡+(경사로: 필요시)
옥내 주차장(지하)	차량 대수×35㎡+(경사로: 180㎡ 필요시) * 교통영향평가 시 20% 추가 확보

바. 외부시설 및 법적시설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고객주차장	(일반차량대수×2.5㎡+장애인차량대수×3.3㎡)×(주차면 길이(5m)+차로폭(6m))+회차공간 (1m×6m)+진입로(3m×6m)
우편차량(8T)	차로+접안면(접안대수×4m×17.5m)+회차공간(13.5m×10m)+진입로(W7m×10.5m)
픽업차량(1T)	대기공간+차로+접안면(접안대수×3m×16m)+진입로(W6m×5m)
옥외 일반주차	옥외 지상식 : 주차대수 × 28㎡, *교통영향평가지 20% 추가 확보
공개공지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
조경면적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내, 연면적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내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내

붙임1

총괄국 건립 연면적 산출 세부내역

구분	세부실 / 점유공간	수도권 4급		대도시 4급		중소도시 4급		중소도시·농어촌 5급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영업 면적	방풍실	8.6	8.6	8.6	8.6	8.6	8.6	8.6	8.6
	자동화코너	11.2	11.2	11.2	11.2	8.3	8.3	8.3	8.3
	사서함실	1.7	1.7	1.7	1.7	1.7	1.7	1.7	1.7
	자율포장대	5.1	5.1	5.1	5.1	4.2	4.2	4.2	4.2
	고객실	198.4	198.4	182.0	182.0	170.7	170.7	104.8	104.8
	현업실	176.4	176.4	160.0	160.0	148.7	148.7	99.0	99.0
	현업휴게실	20.8	20.8	19.2	19.2	16.0	16.0	15.0	15.0
	VIP고객상담실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고객상담실2 (금융/보험상담실)	-	-	-	-	-	-	-	-
	영업과물품창고	35.3	35.3	32.0	32.0	29.7	29.7	19.8	19.8
	문서고	35.3	35.3	32.0	32.0	29.7	29.7	19.8	19.8
	벽금고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자금실	14.0	14.0	14.0	14.0	14.0	14.0	7.0	7.0
	보험관리사실	282.0	210.0	246.0	174.0	210.0	138.0	71.0	53.0
	보험업무용창고	8.0	8.0	8.0	8.0	8.0	8.0	5.0	5.0
	마케팅실	-	-	-	-	-	-	-	-
	방문택배실	-	-	-	-	-	-	-	-
	소계	843.9	771.9	767.0	695.0	696.7	624.7	411.2	393.2
물류 공간	다기능작업장	429.6	266.2	370.0	231.4	344.0	205.4	219.2	138.6
	발착계, 소포계창고	7.0	5.0	6.0	5.0	5.0	5.0	5.0	5.0
	발착계, 소포계휴게실	28.0	16.0	24.0	16.0	20.0	12.0	18.0	10.0
	화물엘리베이터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물류과사무실	51.0	43.0	51.0	43.0	47.0	43.0	47.0	43.0
	운용(집배)사무실	93.0	75.0	75.0	63.0	69.0	57.0	39.0	33.0
	집배실	1,094.0	815.5	900.5	686.0	835.0	620.5	408.0	262.5
	이륜차 주차장	980.8	806.8	806.8	690.8	748.8	632.8	458.8	400.8
	집배원휴게실	124.0	94.0	94.0	74.0	84.0	64.0	36.0	32.0
	특수계작업실	141.0	95.0	113.0	79.0	101.0	67.0	52.0	40.0
	특수계창고	28.2	19.0	22.6	15.8	20.2	13.4	10.4	8.0
	갱의실(남) (휴게공간포함)	108.6	79.6	84.2	64.3	74.2	55.1	34.4	23.0
	갱의실(여) (휴게공간포함)	12.1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샤워실(남)	25.6	18.7	19.8	15.1	17.5	13.0	8.1	6.0
샤워실(여)	6.0	6.0	6.0	6.0	6.0	6.0	6.0	6.0	

구분	세부실 / 점유공간	수도권 4급		대도시 4급		중소도시 4급		중소도시·농어촌 5급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탈의실(남)	13.7	11.6	11.9	10.5	11.2	9.9	9.6	9.6
	탈의실(여)	9.6	9.6	9.6	9.6	9.6	9.6	9.6	9.6
	세탁실	18.0	18.0	18.0	18.0	18.0	18.0	15.0	15.0
	소계	3,202.1	2,423.0	2,656.4	2,071.5	2,454.5	1,875.6	1,420.1	1,086.1
지원공간	국장실	33.0	33.0	33.0	33.0	33.0	33.0	17.0	17.0
	부속공간(지원부서)	16.1	16.1	16.1	16.1	16.1	16.1	-	-
	노조사무실 (우정+공무원)	96.0	96.0	96.0	96.0	64.0	64.0	64.0	64.0
	지원과사무실	58.0	50.0	50.0	42.0	50.0	42.0	-	-
	지원과 문서고	20.0	20.0	20.0	20.0	20.0	20.0	-	-
	창고(관리업무용)	20.0	20.0	20.0	20.0	20.0	20.0	16.0	16.0
	지원과(여직원휴게실)	20.0	20.0	20.0	20.0	20.0	20.0	-	-
	경영지도실(필요시설치)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대회의실(필요시설치)	184.7	150.2	151.6	127.4	139.5	116.2	84.2	71.3
	소회의실	30.0	30.0	26.0	26.0	26.0	26.0	26.0	26.0
	경비실(숙직실)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소계	505.8	463.3	460.7	428.5	416.6	385.3	235.2	222.3
휴생공간	식당	108.2	88.2	90.7	76.7	83.7	70.2	51.7	44.2
	주방	60.3	52.3	53.3	47.7	50.5	45.1	37.7	34.7
	체력단련실	87.0	67.0	69.5	55.5	62.5	49.0	32.0	32.0
	용역원 휴게실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소계	270.4	222.4	228.4	194.8	211.6	179.2	136.3	125.8
전용면적 합계		4,822.3	3,880.6	4,112.5	3,389.8	3,779.4	3,064.8	2,202.9	1,827.4
공용면적	서비스창고(필요시설치)	96.4	77.6	82.2	67.8	75.6	61.3	44.1	36.5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	18.0	20.0	18.0	14.0	18.0	14.0	10.0	10.0
	빗물이용시설	210.0	120.0	150.0	90.0	150.0	90.0	120.0	60.0
	기계실	482.2	388.1	411.2	339.0	377.9	306.5	176.2	146.2
	전기실	337.6	271.6	287.9	237.3	264.6	214.5	30.0	30.0
	공용면적	1,687.8	1,358.2	1,439.4	1,186.4	1,322.8	1,072.7	550.7	456.8
	MDF실(집중구내통신실)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IDF실(중간구내통신실)								
	위탁소포작업공간(지하)	-	-	281.2	281.2	281.2	281.2	281.2	281.2
	초소형전기차(지하)	-	-	-	-	-	-	-	-
	옥내 주차장(지하)	4,298.2	2,231.1	2,661.6	1,313.5	2,748.2	1,398.0	1,408.4	524.7
공용면적	7,145.2	4,481.6	5,346.5	3,544.1	5,253.2	3,453.1	2,635.6	1,560.5	
연면적		11,967.5	8,362.1	9,459.0	6,934.0	9,032.6	6,517.9	4,838.5	3,387.9
		12,000	8,370	9,500	7,000	9,050	6,520	4,840	3,390

붙임2

총괄국 부지면적 산출 세부내역

구분	산출기준	총괄국 규모			
		수도권 (4급)	대도시 (4급)	중소도시 (4급)	중소도시·농어촌 (5급)
건축면적	1층 바닥면적 (영업공간+물류공간) * 지원공간, 지하층 제외	4,050~3,200	3,430~2,770	3,150~2,500	1,830~1,480
조경면적	대지면적 × 15%	1,050~600	750~450	750~450	600~300
주차면적	고객차량, 우편차량 등	1,560~1,220	1,500~1,150	1,470~1,120	1,070~825
공개공지	대지면적 × 10%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용 대상 이나, 총괄국은 시·군·구 대표 청사로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 조성 검토 필요(쉼터 등)	700~400	500~300	500~300	-
합계	-	7,360~5,420	6,180~4,670	5,870~4,370	3,500~2,605

※ 상기 면적은 총괄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실제 총괄국 건립계획 시 변경될 수 있음

□ **집배센터 건립 물량기준**

가. 영업공간 물량기준

구분	산출기준	창구수 규모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인원	5인 이상 국장 추가, 7인 이상 국장+서무 추가, 9인 이상 국장+팀장+서무 추가	3	4	6	7	9	10	12	13
자동화기기 수	-	1	1	1	1	2	2	3	3
자율포장대 개수	1개 의무 반영	2	2	2	2	2	2	3	3
총 창구 수		3	4	6	7	8	9	10	11
우편창구 수	- 우편카운터는 금융카운터 대비하여 같거나 1개 더 많음 - 5인이상 관서 폭주기 대비 서비스창구 1개 반영	2	2	3	4	4	5	5	6
금융창구 수		1	2	3	3	4	4	5	5
컨베이어 대수	우편창구 수 당 1개	2	2	3	4	4	5	5	6
공과금수납기	-	1	1	1	1	2	2	2	2
우편자동화기기	-	1	1	1	1	2	2	2	2
청원경찰	1인 의무 반영	1	1	1	1	1	1	1	1

나. 물류공간 물량기준

구분	산출기준	집배규모 / 집배구수							
		5구	10구	15구	20구	25구	30구	35구	40구
우편차량 접안 대수	집배센터국 연면적 물량기준	1	1	2	2	2	2	2	2
우편물 팔레트 수	-	5	6	7	9	11	13	15	17
특수통상 팔레트 수	-	0	0	0	1	1	2	2	2
순로구분기 대수	집배센터국 연면적 물량기준	0	0	0	0	1	1	1	1
업무용차량 대수	집배센터국 연면적 물량기준	1	2	3	4	5	5	6	6
집배원 수	집배센터국 연면적 물량기준	5	10	15	20	25	30	35	40
집배팀 수	15명 당 1팀	1	1	1	2	2	2	3	3
소포구분구	별도 기준 없음	0	0	0	0	1	1	1	1
위탁소포구 수	집배센터국 연면적 물량기준	0	0	0	3	5	7	9	10
발착실 인원 (실장 포함)	-	1	2	2	2	3	3	4	4
특수실 인원(실장 포함)	집배센터국 연면적 물량기준	0	0	0	1	2	2	2	2
화물엘리베이터 대수	집배실 2층 계획 시 반영	0	0	2	2	2	2	2	2
PC대수	-	1	2	3	4	5	6	7	8
PDF보관 캐비닛 수	-	1	1	1	2	2	2	2	2
전체 근무인원 (식당, 체력단련실 용)	집배센터국 연면적 물량기준	9	15	22	33	42	49	55	62

□ 집배센터 건립 면적 세부산출 내역

가. 영업공간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방풍실	방풍실면적 = 방풍실너비(a)×방풍실폭(b) (a) 외부 자재문 + 내부 자재문 사용시 = 방풍실너비(출입문폭×(출입문개소-1)+방풍실폭 (3.6m)) × 방풍실폭(최소 2.8m) (b) 외부 자재문 또는 슬라이딩문 + 내부 슬라이딩문 사용시 = 방풍실너비(출입문폭×(출입문개소-1)+방풍실폭 (4.0m)) × 방풍실폭(최소 2.4m) * 총 현업실 창구수가 6구 이하일 경우, 출입문 1개소 설치(일괄 적용)
자동화코너	자동화기기기수 × 5㎡
소포 포장 공간	- 고객 소포포장대(기본 반영): 3m*4m - 자율포장대: {(0.6(작업대 너비)×작업대 수)+(0.8×2(작업대 양쪽 공간너비))}×(0.8(작업대 폭)+0.7(복도 폭))
고객실	{(우편창구수×1.8m)+(중량저울카운터수×0.8m)+(금융창구수×1.8m)+(서비스통로수×1.2m)+ 순번대기표시기폭(0.7m)+우편물수거함폭(0.3m)}×고객실깊이(6.3m)+자동공과금수납기대수 ×3㎡+우편자동화기기×6㎡+청원경찰공간4㎡(필요시) * 7인 이상 창구국 서비스통로 2개
마케팅 공간	응접공간(10㎡)+5인 이상 시(창구 1개당×1㎡)
접수공간	{(우편창구수×1.8m)+(중량저울카운터수×0.8m)+(금융창구수×1.8m)+(서비스통로수×1.2m)+ 순번대기표시기폭(0.7m)+우편물수거함폭(0.3m)}×현업실깊이(6.25m) * 7인 이상 창구국 서비스통로 2개
직원휴게실 (탕비실 포함)	휴게공간(현업직원수×1㎡)+갱의비품공간(현업직원수×0.6㎡) * 최소면적 9㎡, 남녀 구분
고객상담실	8㎡(상담직원공간, 탕비실 2.4㎡ 포함) + 8㎡(응접공간), 6인 이상
UPS실	12㎡(본부 문서 지시사항)
창고 및 문서고	접수공간 면적의 40% (창고 20%, 문서고 20%)
공용면적	1층: 전용면적의 25%(화장실, 복도 등) 이상 소요, 5인 관서 이하 적용 2층: 전용면적의 35%(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등) 이상 소요, 6인 관서 이상 적용

나. 물류공간 면적 산출기준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발착실 (구분공간)	운송작업공간(우편차량접안대수×16㎡)+(계약소포픽업차량접안대수×15㎡)+파레트대기공간(오전도착파레트수×1.2㎡)+발착계사무실((팀장(6㎡)+직원수×4㎡)+회의공간(5㎡))
발착실 (발착공간)	운송작업공간(우편차량접안대수×16㎡)+(계약소포픽업차량접안대수×15㎡)+파레트대기공간(오전도착파레트수×1.2㎡)+((소포구분구수/4+소포전담구수)×4.8㎡)+발착/소포계사무실((팀장×6㎡)+(직원수×4㎡)+회의공간(8㎡))+냉장/냉동창고공간(18㎡)
집배실 (분류공간)	운송공간((엘리베이터면적(대수×16㎡))+파레트대기공간(오전도착통상파레트수×1.0㎡)+(자동순로구분기대수×75㎡)+선구분작업공간(96㎡)+팀내배분작업공간(팀×15㎡)+순로구분작업공간(집배구수×4.5㎡)+수집우편공간(32㎡)+전산등록공간(PC대수×4㎡)+(PDA보관캐비닛수×1.5㎡))
이륜차주차장	이륜차대수×5.7㎡+경사로(180㎡, 집배 15구 이상)
순로구분기	순로구분기 대수 × ((가로 15m+여유폭2m * 세로 3m+여유폭4m)) * 우편작업실 설계기준
특수실	팀장6㎡+(직원수×4㎡)+(1.0㎡×1일도착 특수통상 파레트수+구분작업공간(30구당 12㎡)+구분선반작업대설치공간(30구당 2㎡)+우편물수령등록공간(15구당PC1대×5㎡)+특수우편보관벽금고(12㎡), 최소면적: 40㎡
남자집배원 휴게실	6㎡(가구면적) + (직원수 × 1㎡), 최소면적 12㎡
여자집배원 휴게실	6㎡(가구면적) + (직원수 × 1㎡), 최소면적 12㎡
남자샤워실	샤워공간(남자직원수*0.1*3) + 탈의공간(6㎡), 최소면적 15.6㎡ 적용
여자샤워실	샤워공간(여자직원수*0.1*3) + 탈의공간(6㎡), 최소면적 15.6㎡ 적용
세탁실	세탁공간(25㎡)
위탁작업장	위탁소포구*5㎡, 지하 위탁 소포일 경우 위탁 소포 작업장(주차면적) 포함
국장실	17㎡
다목적공간	20㎡(소회의실 등, 20구 이상 적용)
노조사무실	필요시 반영
체력단련실	직원수*0.1*5㎡, 최소 32㎡
기계실 등	10구 이하: 무정전전원장치(5㎡)+통신시설 등(15㎡) 기계실: 전용면적의 8% / 전기실: 전용면적의 5%
공용면적	1층: 전용면적의 25%(화장실, 복도 등) 이상 소요, 10구 이하 적용 2층: 전용면적의 35%(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등) 이상 소요, 15구 이상 적용

다. 외부시설 및 법적시설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건축면적(창구)	- 영업실 3인~5인: 1층 바닥면적 / 6인 이상은 1층의 1/2
건축면적(집배)	- 집배구 5구, 10구: 1층 바닥면적(영업공간+물류공간) - 집배구 15구 이상: 1층 바닥면적(이륜차경사로 180㎡, 공용면적 100㎡), 발착장
조경면적	연면적에 따라 상이 *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주차면적(고객)	(일반차량대수×2.5m+장애인차량대수×3.3m)×(주차면 길이(5m)+차로(6m))+회차공간(1m×6m)+진입로(3m×6m)
주차면적(업무)	우편차량(8T) 차로+접안면(접안대수×4m×17.5m)+회차공간(13.5m×10m)+진입로(W7m×10.5m)+대기공간 픽업차량(1T) 차로+접안면(접안대×3m×16m)+진입로(W6m×5m)
주차면적(위탁)	위탁소포 배달차량 대수×(주차공간 35㎡+작업공간 20㎡)+파레트 대기공간(위탁소포구*3대)*1.2㎡+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면적+위탁소포택배실(위탁소포구×1㎡)+경사로 곡선: (차로6.5+벽0.3×2)×5.5×7.2

붙임1

집배센터 건립 연면적 산출 세부내역

□ 영업(접수)기능 면적 (단위 : m²)

실별구분	세구분	창구(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고객실	방공실	10	10	10	20	20	20	20	20
	자동화코너	5	5	5	5	10	10	15	15
	소포포장공간	16	16	16	16	16	16	17	17
	고객대기공간①	71	82	110	126	154	171	182	198
	마케팅공간	0	0	16	17	18	19	20	21
소계(1)		102	114	157	185	219	236	254	272
영업실	접수공간②	58	69	96	113	131	148	159	175
	직원휴게실	9	9	10	11	14	16	19	21
	고객상담실	0	0	0	16	16	16	16	16
UPS실(통신실)		12	12	12	12	12	12	12	12
창고 및 문서고		23	28	39	45	53	59	64	70
소계(2)		102	117	156	197	226	251	269	294
층수		1층	1층	1층	2층	2층	2층	2층	2층
전용면적	전용면적(4)	204	231	314	381	445	486	524	565
공용공간	공용공간(5)	51	58	79	134	156	171	184	198
합계(4+5)		255	288	393	515	601	657	708	763

□ 집배기능 면적 (단위 : m²)

실별구분	세구분	집배구(수)							
		5구	10구	15구	20구	25구	30구	35구	40구
발차실	구분공간	26	31	48	58	64	67	73	75
	발차공간	44	49	66	83	99	102	108	110
집배실	분류공간	114	119	156	178	304	310	331	337
	이륜차주차장	29	57	266	294	323	351	380	408
	순로구분기	-	-	-	-	119	119	119	119
	특수실	-	-	-	40	45	48	49	51
	남자집배원휴게실	15	21	28	39	48	55	61	68
	여자집배원휴게실	12	12	12	12	12	12	12	12
	남자샤워실	16	16	16	16	16	17	19	20
	여자샤워실	16	16	16	16	16	16	16	16
	세탁실	25	25	25	25	25	25	25	25
소포실	위탁작업장	-	-	-	15	25	35	45	50
기타	국장실	-	-	-	17	17	17	17	17
	다목적공간	-	-	-	20	20	20	20	20
	노조사무실	-	-	-	-	-	-	-	-
소계(①)		296	346	633	812	1,133	1,193	1,275	1,328
지원공간	체력단련실(2)	32	32	32	32	32	32	32	32
공용공간	기계실 등	20	20	86	110	151	159	170	177
	공용공간	82	94	233	295	408	429	457	476
소계(②)		134	146	351	437	591	620	659	685
합계(①+②)		430 (=430)	492 (=500)	984 (=1,000)	1,249 (=1,250)	1,724 (=1,730)	1,813 (=1,820)	1,934 (=1,940)	2,013 (=2,020)

⇒ 집배센터 연면적 : 영업(접수)기능 면적 + 집배기능 면적

붙임2

집배센터 부지면적 산출 세부내역

구분	산출기준	5구	10구	15구	20구	25구	30구	35구	40구
건축면적(창구)	창구 3~5개 : 1층 바닥면적 // 6개 이상은 1층의 1/2	255	288	393	258	300	329	354	382
건축면적(집배)	- 집배구 5구, 10구: 1층 바닥면적(영업공간+물류공간) - 집배구 15구 이상: 1층 바닥면적(이륜차경사로 180㎡, 공용면적 100㎡), 발착장	430	492	395	421	443	448	461	466
조경면적	-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내 - 연면적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내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내 *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119	130	139	130	206	213	220	227
주차면적(고객주차장)	(일반차량대수×2.5m+장애인차량대수×3.3m)×(주차면 길이(5m)+차로폭(6m))+회차공간(1m×6m)+진입로(3m×6m)	91	103	116	128	141	153	166	178
주차면적(업무용차량)	우편차량(8T) 차로+접안면(접안대수×4m×17.5m)+회차공간(13.5m×10m)+진입로(W7m×10.5m)+대기공간 픽업차량(1T)차로+접안면(접안대수×3m×16m)+진입로(W6m×5m)	414	414	484	484	484	484	484	484
주차면적(위탁소포차량)	위탁소포 배달차량 대수×(주차공간 35㎡+작업공간 20㎡)+파레트 대기공간(위탁소포구*3대)*1.2㎡+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면적+위탁소포택배실(위탁소포구×1㎡)+경사로 곡선: (차로6.5+벽0.3×2)×5.5×7.2	-	-	-	485	600	714	828	886
공개공지	연면적 5,000㎡ 이상	-	-	-	-	-	-	-	-
소계(지상층)①		1,309	1,427	1,526	1,905	2,175	2,341	2,513	2,622
건폐율 산정 부지면적②	건폐율 기준	1,141	1,301	1,312	1,130	1,240	1,295	1,358	1,412
합계(1+2)		1,309	1,427	1,526	1,905	2,175	2,341	2,513	2,622

※ 상기 면적은 집배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실제 집배센터 건립계획 시 변경될 수 있음

□ **창구국 건립 물량기준**

가. 물량기준

구분	산출기준	창구수 규모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인원	창구인원 5인 이상 국장 추가, 7인 이상 국장+서무 추가, 9인 이상 국장+팀장+서무 추가	3	4	6	7	9	10	12	13
자동화기기 수	-	1	1	1	1	2	2	3	3
자율포장대 개수	-	2	2	2	2	2	2	3	3
총 창구 수		3	4	6	7	8	9	10	11
우편창구 수	- 우편카운터는 금융카운터 대비하여 같거나 1개 더 많음	2	2	3	4	4	5	5	6
금융창구 수	- 5인 이상 관서 폭주기 대비 서비스 창구 1개 반영	1	2	3	3	4	4	5	5
컨베이어 대수	우편창구 수 당 1개	2	2	3	4	4	5	5	6
공과금수납기	-	0	1	1	1	1	2	2	2
우편자동화기기	-	0	1	1	1	1	2	2	2
청원경찰	- 1인 의무 반영	1	1	1	1	1	1	1	1
우편물 팔레트 수	- 팔레트 수는 국사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조사 후 반영 필요	5	6	7	8	16	13	15	20
우편차량	- 발착장 동시접안 대수	1	1	1	1	1	2	3	3

□ 창구국 건립 면적 세부산출 내역

가. 영업공간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방풍실	방풍실면적 = 방풍실너비(a)×방풍실폭(b) (a) 외부 자재문 + 내부 자재문 사용시 = 방풍실너비(출입문폭×(출입문개소-1)+방풍실폭 (3.6m)) × 방풍실폭(최소 2.8m) (b) 외부 자재문 또는 슬라이딩문 + 내부 슬라이딩문 사용시 = 방풍실너비(출입문폭×(출입문개소-1)+방풍실폭 (4.0m)) × 방풍실폭(최소 2.4m) * 총 현업실 창구수가 6구 이하일 경우, 출입문 1개소 설치(일괄 적용)
자동화코너	자동화기기기수 × 5㎡
소포 포장 공간	- 고객 소포포장대(기본 반영): 3m*4m - 자율포장대: {(0.6(작업대 너비)×작업대 수)+(0.8×2(작업대 양쪽 공간너비))}×{0.8(작업대 폭)+0.7(복도 폭)}
고객실	{(우편창구수×1.8m)+(중량저울카운터수×0.8m)+(금융창구수×1.8m)+(서비스통로수×1.2m)+ 순번대기표시기폭(0.7m)+우편물수거함폭(0.3m)}×고객실깊이(6.3m)+자동공과금수납기대수 ×3㎡+우편자동화기기×6㎡+청원경찰공간4㎡(필요시) * 7인 이상 창구국 서비스통로 2개
마케팅 공간	응접공간(10㎡)+5인 이상 시(창구 1개당×1㎡)
접수공간	{(우편창구수×1.8m)+(중량저울카운터수×0.8m)+(금융창구수×1.8m)+(서비스통로수×1.2m)+ 순번대기표시기폭(0.7m)+우편물수거함폭(0.3m)}×현업실깊이(6.25m) * 7인 이상 창구국 서비스통로 2개
직원휴게실 (탕비실 포함)	휴게공간(현업직원수×1㎡)+갱의비품공간(현업직원수×0.6㎡) * 최소면적 9㎡, 남녀 구분
고객상담실	8㎡(상담직원공간, 탕비실 2.4㎡ 포함) + 8㎡(응접공간), 4인 이상
UPS실	12㎡(본부 문서 지시사항)
창고 및 문서고	접수공간 면적의 40% (창고 20%, 문서고 20%)

나. 물류공간 및 전용·공용면적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발착공간	운송작업공간(우편차량접안대수×16㎡)+파레트대기공간(파레트수×1.2㎡)
전용면적	전용면적(영업공간 면적+발착공간)
공용면적	1층: 전용면적의 25%(화장실, 복도 등) 이상 소요, 5인 관서 이하 적용 2층: 전용면적의 35%(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등) 이상 소요, 6인 관서 이상 적용

다. 외부시설 및 법적시설

구성요소	면적 산정기준
건축면적	1층 바닥면적(영업공간+물류공간) / 7인 관서 이상 2층으로 구성
조경면적	연면적에 따라 상이 ※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주차면적(고객)	(일반차량대수×2.5㎡+장애인차량대수×3.3㎡)×(주차면 길이(5m)+차로폭(6m))+회차공간(1m×6㎡)+진입로(3m×6㎡)
발착공간(5TON)	차로+접안면(접안대수×3.5㎡×14㎡)+회차공간(10.5㎡×9㎡)+진입로(W6.5㎡×7.5㎡)

붙임1

창구국 건립 연면적 산출 세부내역

□ 면적 (단위 : m²)

실별구분	세구분	창구(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고객실	방풍실	9.6	9.6	9.6	20.0	20.0	20.0	20.0	20.0
	자동화코너	5.0	5.0	5.0	5.0	10.0	10.0	15.0	15.0
	소포포장공간	16.2	16.2	16.2	16.2	16.2	16.2	17.1	17.1
	고객실①	63.9	84.2	111.9	128.3	149.1	174.5	185.8	202.2
	마케팅공간	0.0	0.0	16.0	17.0	18.0	19.0	20.0	21.0
	소계(1)	94.7	115.0	158.7	186.5	213.3	239.7	257.9	275.3
영업실	접수공간②	57.5	68.8	96.3	112.5	131.3	147.5	158.8	175.0
	직원휴게실 (탕비실 포함)	18.0	18.0	18.0	18.0	18.0	18.0	19.2	20.8
	고객상담실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UPS실(통신실)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참고 및 문서고		23.0	27.5	38.5	45.0	52.5	59.0	63.5	70.0
소계(2)		126.5	142.3	180.8	203.5	229.8	252.5	269.5	293.8
층수		1층	1층	1층	1층	3층	2층	2층	2층
물류공간	발착공간(3)	22.0	23.2	24.4	25.6	35.2	47.6	66.0	72.0
전용면적	전용면적(4)	243.2	280.4	363.9	415.6	478.2	539.8	593.4	641.1
공용공간	공용공간(5)	61.0	71.0	91.0	104.0	167.4	189.0	208.0	225.0
합계(4+5)		305.0 (=300)	352.0 (=360)	455.0 (=450)	520.0 (=520)	645.6 (=650)	729.0 (=730)	802.0 (=800)	867.0 (=870)

붙임2

창구국 부지면적 산출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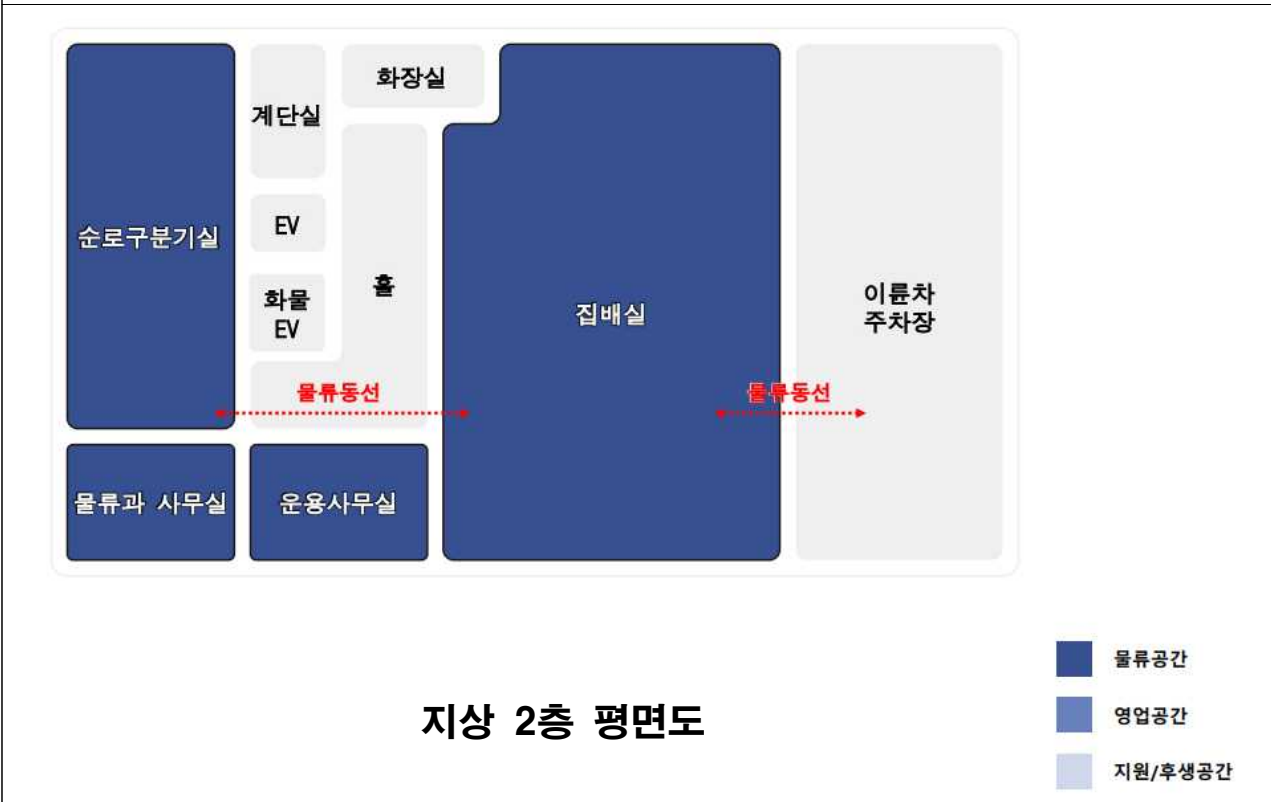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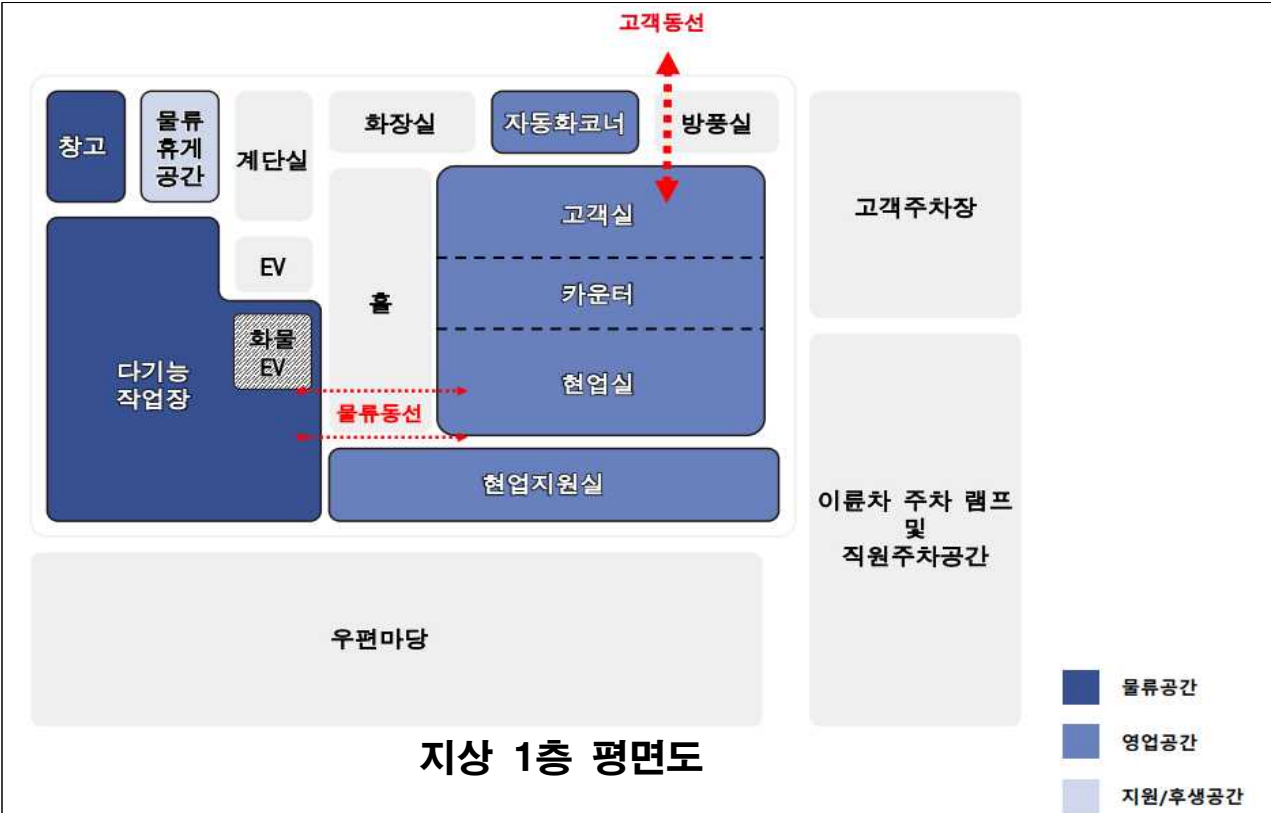
구분	산출기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건축면적	1층 바닥면적(영업공간+물류공간) // 7개 이상 창구 설치 관서는 2층으로 구성 검토 * 지원공간, 지하층 제외	305	352	455	520	646	729	802	867
조경면적	-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내 - 연면적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내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내 *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31	35	43	48	54	63	71	75
주차면적 - 고객주차장	(일반차량대수×2.5m+장애인차량대수×3.3m)× (주차면길이(5m)+차로폭(6m))+회차공간 (1m×6m)+진입로(3m×6m)	115	143	198	225	225	280	308	335
발차공간 (5TON 기준)	차로+접안면(접안대수×3.5m×14m)+회차공간 (10.5m×9m)+진입로(W6.5m×7.5m)	198	198	198	198	198	247	296	296
공개공지	연면적 5,000㎡ 이상	-	-	-	-	-	-	-	-
소계		650	728	894	992	1,123	1,320	1,477	1,574
건폐율 산정 부지면적	건폐율 기준	509	587	759	867	1,077	1,215	1,337	1,445
합계		650	730	900	1,000	1,130	1,320	1,480	1,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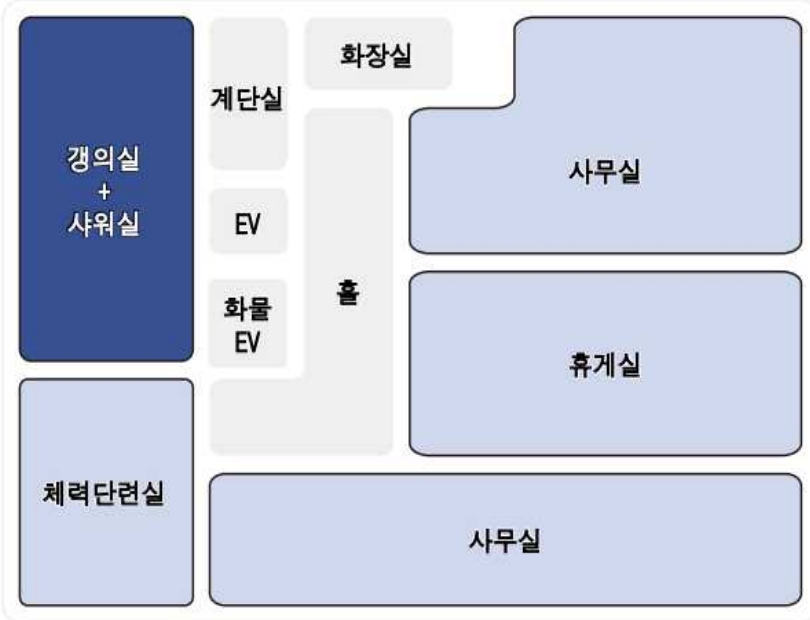
※ 상기 면적은 창구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실제 창구국 건립계획 시 변경될 수 있음

참고4

우체국 형태별 평면·단면 구성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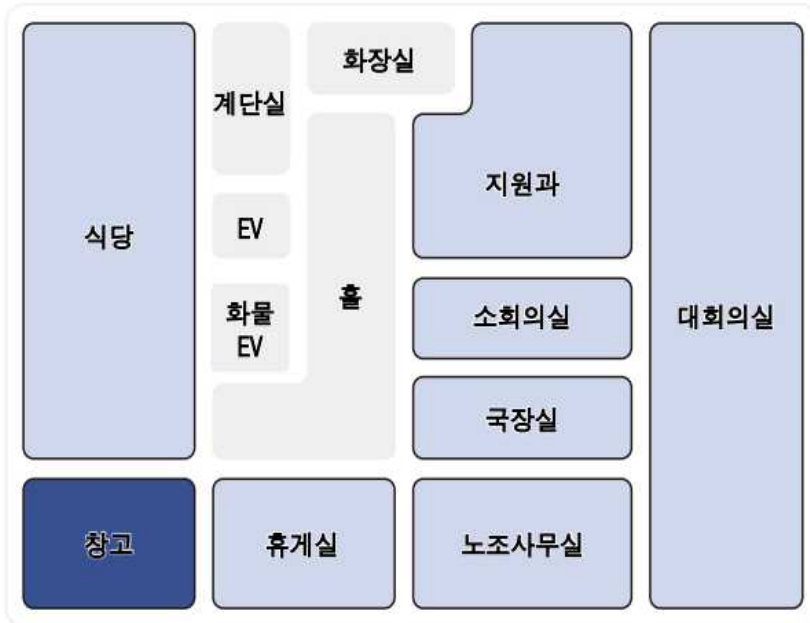
□ **총괄국**(영업^(접수) + 집배 + 지원기능)





지상 3층 평면도

- 물류공간
- 영업공간
- 지원/후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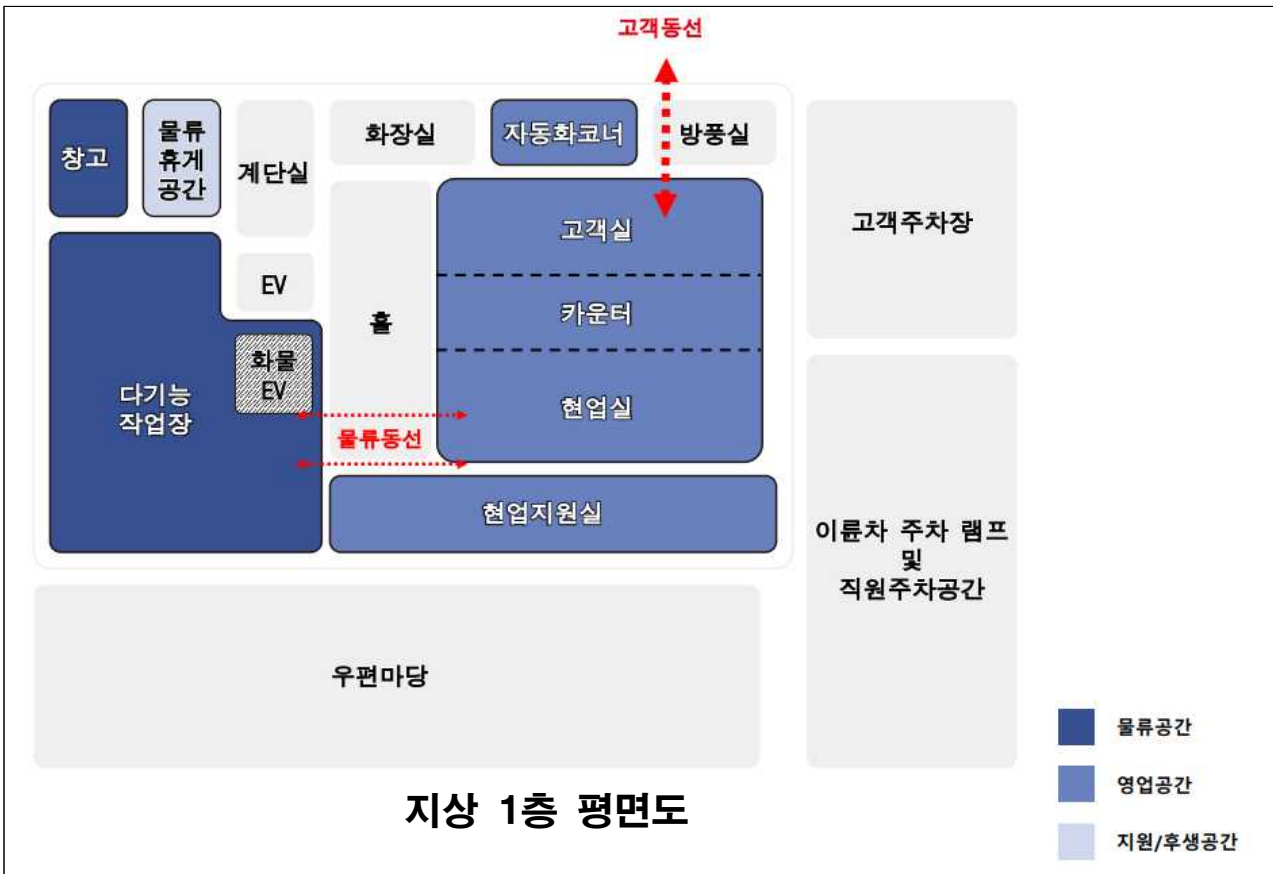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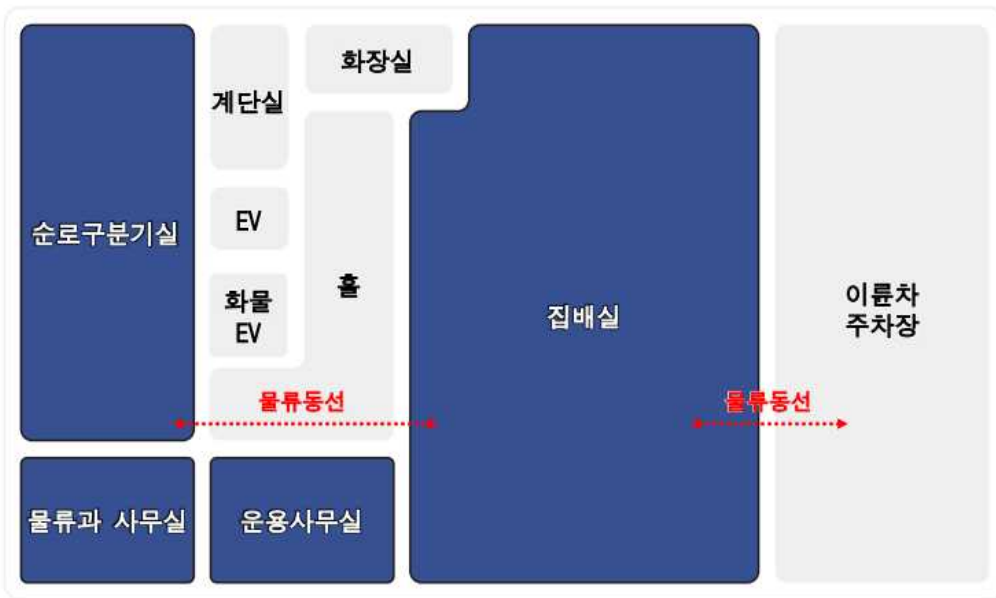
지상 4층 평면도

- 물류공간
- 영업공간
- 지원/후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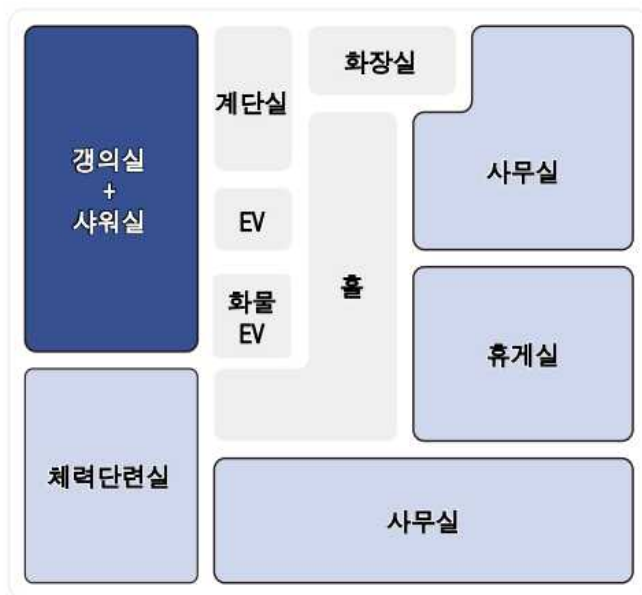
□ **집배센터(영업^{접수} + 집배기능)**





지상 2층 평면도

- 물류공간
- 영업공간
- 지원/후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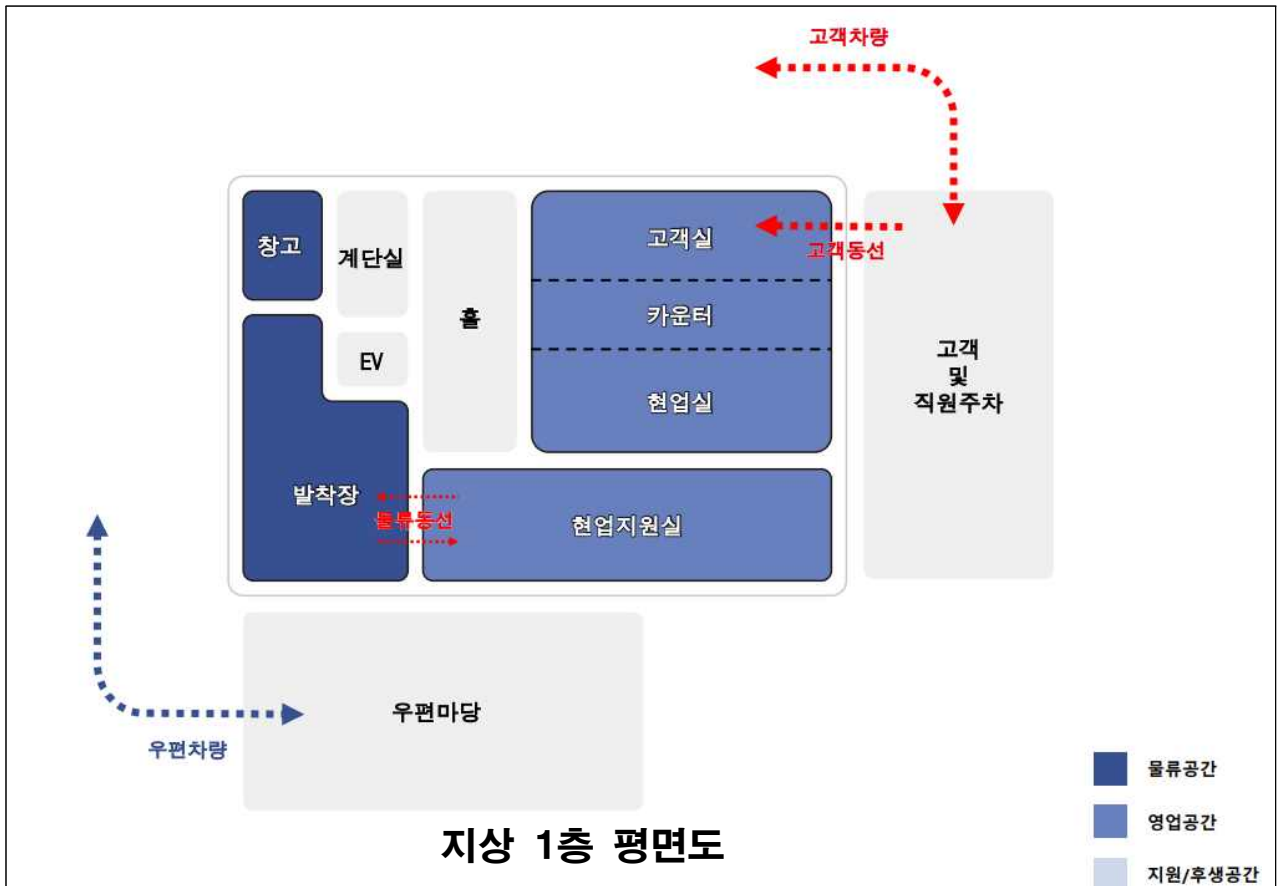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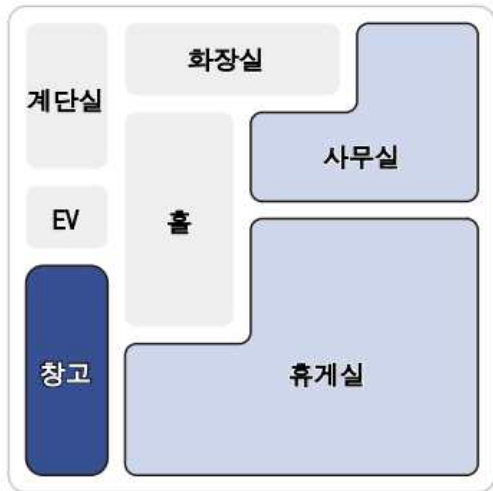
지상 3층 평면도

- 물류공간
- 영업공간
- 지원/후생공간



□ **창구국(영업접수기능)**





지상 2층 평면도

- 물류공간
- 영업공간
- 지원/후생공간



단면도

- 물류공간
- 영업공간
- 지원/후생공간